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86
----------	-------

발의연월일 : 2023. 6. 15.

발의자 : 최영희 · 박대수 · 이현승
조경태 · 구자근 · 허은아
김학용 · 김미애 · 송언석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44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u>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u>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